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증특례 지정의 패스트트랙 확대〉

■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088호)

20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신기술 실증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의 패스트트랙 확대 (안 제16조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 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29.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

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Ⅲ. 검토의견

1. 신기술 실증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의 패스트트랙 확대 (안 제16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간소화(이하 “패스트트랙”) 대상을 기존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신기술에서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생략)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⑧ ~ ⑰ (생략)	1. <u>신청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u> 2. <u>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등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u> ⑧ ~ ⑰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의2¹⁾는 신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시험·평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7항은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관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3. 실증특례의 적정성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 ⑩ 생략

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규제특례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신청을 다시 처음부터 심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실증특례 지정 절차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특히 기술개발 및 시장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이러한 심의 기간이 기업의 시제품 제작, 현장실증 및 사업화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경우'까지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유사사례가 없는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이는 규제특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기술의 시제품 제작·실증·사업화 간 연계를 촉진하고,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 등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패스트트랙 확대에 따른 사전 검토의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절차에서 관계부처 협의는 해당 신기술이 각 분야의 법령 및 정책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환경·보건·안전 등 관계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분야의 위험요인이나 규제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술이 안전하거나 규제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상 금지 여부와 별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환경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문위원회의 심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문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²⁾에 따라 현재 특구위원회 위원(2인, 10%), 교수(10인, 50%),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종사자(6인, 30%), 변리사(1인, 5%), 소비자연맹(1인, 5%) 등 2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동일한 기준³⁾ 및 절차에 따라 실증특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나.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가.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나.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2.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기술 및 관련 규제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신기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⑧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3) ①신기술의 혁신성,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익, ②국민 생명·안전·환경의 피해 여부, ③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④실증특례의 적정성, ⑤규제면제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중 일부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될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심의의 대표성 및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위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심의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심의 결과 및 근거의 기록·관리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동일·유사 신기술’에서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까지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신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혁신 및 기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특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증·신고 등의 요건이나 일반적인 안전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실상 규제가 이루어

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을 규제가 없거나 신속한 실증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기술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안전성·환경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의 회색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특례 신청 전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결과, (제1호)기준·요건이 부재한 경우, (제2호)기준·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제3호)허가 등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임.

- 또한, 현재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⁴⁾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② 삭제

③~⑤ 생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신속처리 대상으로 확정·분류하고 관계기관(규제부처) 검토 결과(의견)을 포함한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지정 여부 심의·의결하는 등 기존 사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바탕으로 신속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술’과 ‘신속한 실증이 가능한 기술’을 동일하게 보지 않도록 별도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패스트트랙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안전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227

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